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식품의약품안전처	보도참고자료		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보도일시	배포 즉시	배포일자	2021. 8. 10.(화)
담당과장	식품표시광고정책과 박동희 (☎043-719-2191)	담당자	조혜영 사무관 (☎043-719-2182)

학용품,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

-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**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·광고를 금지**하는 내용을 담은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을 **8월 10일 입법예고**합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**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**으로 어린이 등이 **생활용품** 등을 식품으로 **오인·섭취**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

-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**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**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○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·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**'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*'**과 **'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**'**으로 한정했습니다.

*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: 어린이 생명·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. 단, 실제 오인·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으로 한정(딱풀, 매직펜 등)

**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: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(구두약 등)

□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·섭취에 따른 **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·광고 제도를 **합리적으로 개선**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·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